

## 구제역 확산 일로

지난 3월 23일 경기도 포천일대의 구제역 증식 선언 이후, 16일 만인 지난 4월 9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 목장에서 10두 중 9두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후 구제역은 4월 22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다.

### 내륙 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 충격

인천 강화지역에 이어 지난 4월 22일 내륙 한 가운데인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인천 강화군 한우농가와 무려 136km 떨어진 충북 충주시는 동서남북 사방에 주요 축산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확산에 따른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날 소지가 있다. 농가와 육가 공업체 등이 비상 상태에 돌입한 것도 모두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즉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과는 상황이 다르다. 더욱이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 'O'형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천 강화군 돼지 구제역 추가발생

지난 4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지역인 강화군 불은면 고농리의 한 농가에서 돼지들을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나와 이로써 강화지역의 구제역 확진 판정 농가는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앞서 해당 농가는 돼지 1천100두와 한우 18두 중 돼지 2두가 몸체에 물집이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이 보여 신고 됐다. 이 농가는 구제역 첫 발생지인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한우 농가로부터 3.1km 떨어져 경계지역에 속했다. 향후 강화군은 이 농장의 소 18두와 돼지 1천100두를 살처분할 방침이며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축산기술연구소까지 구제역

지난 5월 3일 충남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우, 돼지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소, 돼지 등의 품종 개량 등을 연구해 새끼 가축 등을 분양하는 정부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정부 방역망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구제역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에서 시작해 충북 청주까지 확산한 구제역이 내륙지방까지 더 번지는 양상이다. 구제역이 생긴 연구소에서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까지의 거리는 25km, 자동차로 20분 정도 거리로 자칫 구제역이 홍성으로 번지면 농가는 물론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5월 2일 현재까지 4만9천90두가 살처분 됐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바이러스 혈청이 강화군과 동일한 'O형' 이어서 강화·김포·충주의 구제역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한우, 육우의 경우 공동적인 시연내용에 따라 보상된다. 돼지와 쇠소의 경우 성장시기와 유량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미정됐다.

## [참고1] 구제역 발생 관련 이동제한 농가 돼지 수매 절차 및 주요내용 안내

1. 수매시기: 수매 개시일은 5월 10일 전후/수매 기간- 5월 10~5월 25일 전후(약 15일간)
  - ① 수매 개시일 전당- 구제역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실시  
※ 수매 개시일: 4월 19일·14일 임상관찰 소요일액 임주임-5월 10일 전후
  - ② 수매 기간 전당- 구제역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21일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해 이동제한 해제  
이동제한 해제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함  
※ 이동제한 해제일: 4월 19일·21일·임상관찰 및 혈청검사기간(약2~3주)=5월 25일 전후  
※ 수매기간: 수매개시일(5월 10일) 부터 이동제한 해제일(5월 25일)까지 약 15일간
2. 수매방법: 시·군에서 확인한 노축출하승인서 첨부하여 지정노축장 출하
3. 수매대상 돼지: ▲비육돈-생체중 100kg 이상(100kg 이하의 위축돈은 수매차량 당 4% 이하까지 수매가능)  
▲사육-생체중 30kg 이하(이동제한 기간 내에 농장밀집으로 인한 살처분 요망 시) ▲종돈- 시·군에 신고된 종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후보종돈 및 사육성종돈으로 출하체중 100kg 이상 ▲110kg 이상 과체중 돼사-수매 비육돈 가격-10% 추가 보상

## [참고2]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농가 돼지 재입식 절차

1. 구제역 발생농장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의 입식시험 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 가능 ▲재입식 가능 예상 일자: 5월 25일 전후(해제일)+30일=60일=8월 22일경
3. 구제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이하 내외지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구제역 발생농장에서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 가능 예상 일자: 5월 25일 전후(해제일)+90일=8월 22일경
3. 그 외 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5월 25일 전후(해제일)+30일=6월 23일경

## [참고 3] 과체중 돼지(구제역 역학조사관련 농장) 차액 보전 지침

1. 차액 보전 대상: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인 관련이 있어 이동제한 주시된 농가 승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생체중 20kg 이상, 탕박 지육종량 90kg 이상) ※ 농기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하여 총 사육두수의 8% 이내 사육노적 대상
2. 차액보전 기간: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1주일, 이동제한일 이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
3. 차액보전 단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해 거래된 가격과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 수매기간의 차액 지원  
▲차액보전단가=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 수매가: - 농가사육가격(기적)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수매가격: - 비육돈 수매가격(수매일 지정 전국 도매시장·공판장 5일 평균가격)의 110% 적용
4. 신청절차: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자자체에 돼지출하신청·자자체는 차액보전을 희망농가에 지정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토록 일리고,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에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출하내시 장산내역서 및 차액보전 금액, 농장수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농협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차액보상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농기별 계좌번호에 차액 보상액 입금

## [참고 4] 젖소농가 보상 방안

1. 농가 단위 유대손실(6개월) 보상(신청)  
현행 보상방법(A형)과 유대 손실분을 가산하여 지원하는 대신 생계안정비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안(B형) 중에서 농가가 택일(현행대로 보상(A형): 시가 기준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정비용+가축입식자금, 유대 손실 보상(B형): 시가 기준 살처분 보상금+입식제한기간 유대손실액, 주.)  
※ 수: [해당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젖소 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입유량(Q)]×[(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Q 당 유대집유입체 중량)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Q 당) 평균 생산비)]×조정계수(0.99), 평가기관은 시도 가축 위생시험소
2. 고능력 젖소(중축개량협회 등록) 생산기차 보상 방안(개정)  
(사)한국중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유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 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로 평가기관은 농협젖소개량사업소  
- 산출식: 평균초과산유량 주, ×(농기별유대-생산비)×이용자여부수×조정계수(0.99)  
※ 수,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수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빼 유량